

광주지방법원 2024. 8. 1 선고 2023가단923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27.

판 결 선 고 2024. 8. 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84.13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판사 윤봉학

별지